

제2장 운영방침

제7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 (1)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 (4) 기관이용 어르신들의 이용절차, 이용수칙, 사고대비, 책임성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한다.
이용어르신과 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전문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하여 보관한다,
체결된 계약서는 전산시스템(케어포)을 통하여 보호자가 수시로 열람 확인할 수 있다,
2. 계약기간 - (1)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연도 말까지 자동연장 된 것으로 간주한다,
(2)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3.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 (2)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당월 경감률에 따라 경감한다.
4. 월 이용료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5. 그 밖의 이용부담액 및 식대, 간식비 등 비급여 항목의 금액을 추가로 실비 청구 할 수 있고, 금액은 아래와 같다.

○ 주야간보호 이용시간별 급여비용(원) < 개정 2020.1.1. > .별첨

[월 이용료 한도액] - 한도액 초과 시 본인부담금이 100% 추가 됩니다.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020년	149만8300	133만1800	127만6300	117만3200	100만7200	56만6600

등급별 급여비용		20년 수가	20년 본인부담
3시간이상	1등급	35,030	5,255
	2등급	32,430	4,865
	3등급	29,940	4,491
	4등급	28,570	4,286
	5등급	27,210	4,082
	인지지원등급	27,210	4,082
6시간이상	1등급	46,960	7,044
	2등급	43,500	6,525
	3등급	40,150	6,023
	4등급	38,790	5,819
	5등급	37,410	5,612
	인지지원등급	37,410	5,612
8시간이상	1등급	58,410	8,762
	2등급	54,110	8,117
	3등급	49,960	7,494
	4등급	48,590	7,289
	5등급	47,210	7,082
	인지지원등급	47,210	7,082
10시간이상	1등급	64,350	9,653
	2등급	59,610	8,942
	3등급	55,070	8,261
	4등급	53,680	8,052
	5등급	52,320	7,848
	인지지원등급	47,210	7,082
12시간이상	1등급	69,000	10,350
	2등급	63,930	9,590
	3등급	59,050	8,858
	4등급	57,690	8,654
	5등급	56,310	8,447
	인지지원등급	47,210	7,082

비급여 항목	금액
식사 재료비 (1식)	3,000 <개정 2020.7.1>
간식비 2회/1일	1,000
이 미용비	-
기타	-

6 . 이용료 등 수납 -

- (1) 센터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 (2)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7 .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이용료 오납시 이용료 차액에 대하여 선납적용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